

## 외국납부세액 공제시기

- Q** 당사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로열티를 지급 받습니다. 계약에 따라 매월 마감 후 2개월 이내에 지급 받습니다.  
따라서 당기 장부에 로열티수입은 1월~12월까지 모두 수익으로 인식하고, 외국납부세액은 1월~10월까지만 계상됩니다.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 신청시 1월~12월 외국납부세액이 모두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는지 질의드립니다.  
법인세 신고 시점(3/31)에 12월분까지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됩니다.
- A**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상의 공제한도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귀사의 경우 1~12월분이 모두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법인세법 제57조 참고)

## 대표이사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 Q** 2015년에 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을 연봉제 전환 조건으로 받았습니다.  
최근에 다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아도 퇴사시 퇴직금을 받아갈 수 있다고 했는데 맞는 건가요?  
그렇다면 요건이 무엇일까요?
- A**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더라도,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는 다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626, 2017.06.22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함에 따라 지출하는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되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임원의 퇴직급여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내국

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함에 따라 지출하는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법인이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정관의 위임규정이 없이 이사회결의로 정한 퇴직급여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 상대 거래처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일방적으로 발행시

**Q** 당사와 거래중인 상대거래처에서 단가 인상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을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상대 측의 금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22.1월부터 3월까지 발행하였고 당사는 부가세 신고시 이를 무시하고 부가세 신고(당사는 매월 조기환급신고 업체)를 하였는데 질문인 즉 단가협의를 절충이 되지 않으면 1기 확정 신고기간에도 당사가 지금처럼 대응해도 될런지 여부입니다.

**A** 공급가액이 다툼이 있는 경우라도 공급자는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우선 신고반영한 뒤, 추후 공급가액에 대한 협의가 원료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매입자인 귀사의 입장에서도 정상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신고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지만, 신고에 반영하지 않아도 매입세액이므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부동산 법인의 이월결손금공제 한도

**Q**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2022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부동산임대업 법인도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이월결손금공제가 100% 가능한지요?

**A**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대업의 경우 무조건 중소기업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매출과 규모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중소기업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에 해당되면 이월결손금 공제 100% 적용도 가능합니다.